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카르텔조사국 내에 총액인건비 팀인 카르텔조사국 민수입찰담합조사팀 신설 및 일몰기간(3년)을 설정하고 총리령 제1466호 근거 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만료로 '21.5.22.자로 직급하향(5급→6급)되는 정원 5명에 대해 총액인건비제 직급상향을 신규로 시행하여 6급 5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3년의 일몰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카르텔총괄과·입찰담합조사과·카르텔조사과 및 국제카르텔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”를 “카르텔총괄과·입찰담합조사과·카르텔조사과·국제카르텔과 및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,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”로, 같은 조 제5항제1호 “금융업”을 “건설업·금융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제4항의 사항 중 민간 부문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은 2024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며, 존속기

간이 만료되면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의 소관사무는 입찰담합조사과에서 수행한다.

제3조(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행정사무관 5명은 2024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며, 2024년 0월 0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5명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카르텔조사국) ① (생략)	제12조(카르텔조사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카르텔조사국에 카르텔총괄 과·입찰담합조사과·카르텔조사 과 및 국제카르텔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 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및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---, - ----- -,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서 기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③ ~ ④ (생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. 다만, 제4항에 따 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금융업·정보통신업</u> 을 제외한 서비스업 분야 및 제조업 분야 (이하 “제조업등 분야”라 한다) 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 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 행 확인	1. <u>건설업·금융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⑦ <u>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제 4항의 사항 중 민간 부문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사</u>

항을 분장한다.